

조세·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15(월)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I 배경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일환인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로써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벤처기업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을 말함¹⁾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벤처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이러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5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김진수·김재진(2000), p. 186, 김재진(2013), p. 13

2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또한,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음
 - 먼저 벤처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벤처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효법인세율 및 기업성과 측면을 실증분석 하였음

II 조사 및 분석결과

1. 벤처산업 현황을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2000년 8,798개에서 연평균 약 19.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29,135개에 이르고 있음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과 투자 잔액은 2013년 기준 각각 1조 3,845억원, 4조 4,673억원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업력 7년 이하의 초기 및 중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로 7년을 초과하는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유형은 장외매각 및 상환이 2013년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IPO 및 M&A를 위한 통한 회수는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 기준 16.0%의 비중

을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신규 IPO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신규 IPO 기업 수 37개 중 약 66.2%인 2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IPO 수가 벤처기업 IPO 수 23개 중 95.7%인 22개로 나타났음

□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는 7년을 초과하는 후기단계의 벤처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창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또한, 벤처캐피탈의 회수유형이 대부분이 장외시장 매각 및 상환의 형태로 이루어져 벤처투자기업이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 해외사례를 통해 본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먼저,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은 <표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자와 벤처캐피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투자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되어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4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표 2-1> 벤처투자자¹⁾ 관련 투자주체별·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벤처 관련 주체별		단계별 세제지원	
벤처 투자자	개인 (엔젤)	투자단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단계	②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합	투자단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유단계	② 벤처투자조합 배당소득·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③ 벤처투자조합 소득금액 계산특례(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인정)
		양도단계	④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⑤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법인	양도단계	①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기금운용법인 ²⁾ 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 캐피탈	보유단계	① 벤처기업 등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단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③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주: 1) 벤처투자자는 벤처캐피탈을 경유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

-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표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2-2> 벤처기업 관련 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벤처 관련 주체별		단계별 세제지원	
벤처기업	창업단계	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	
	인수·합병 단계	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위의 벤처캐피털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미흡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 1> 참조)
 - 조사대상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단계별로 더 다양하게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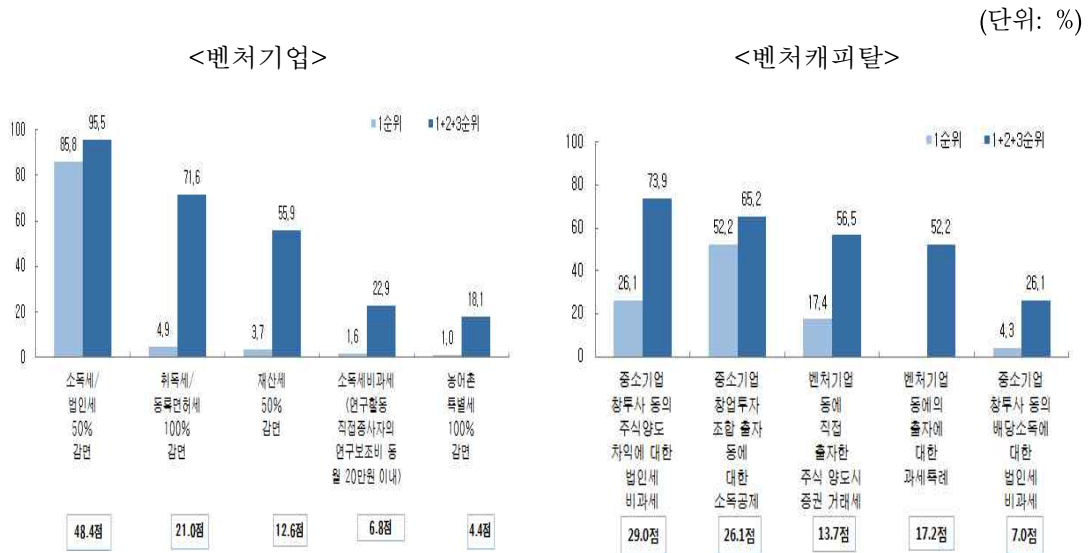
3.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분석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본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 제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상위 3개의 항목을 선택할 때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74.7%가 조세지원제도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77.7%, 73.9%로 높게 나타나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조사되었음

[그림 2-1]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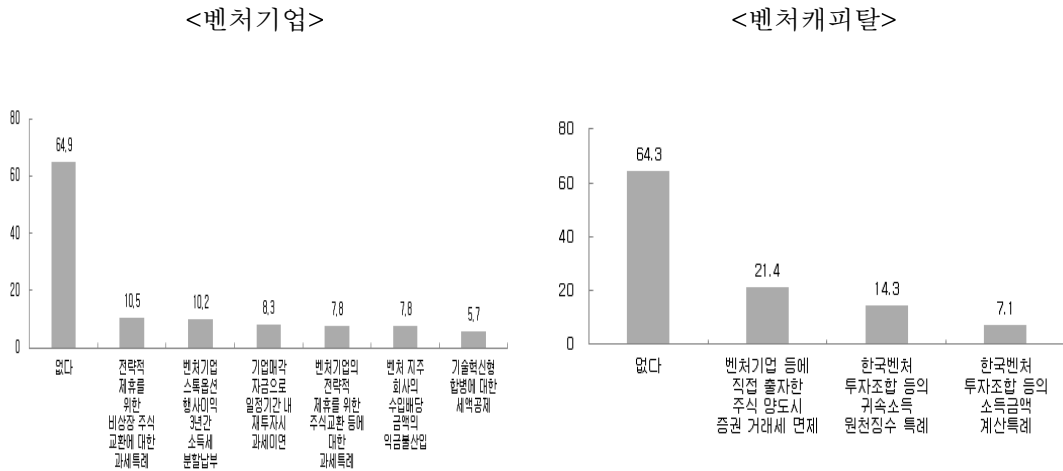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한편,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벤처기업의 경우 ‘없다’ (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0.5%),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할 제도로는 ‘없다’ (64.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 (21.4%)가 그 다음으로 나타남

[그림 2-2]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조세지원제도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인 여건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 위주로 개편하되, 벤처산업 지원 차원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임을 시사하는 바임

4.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낮은지를 살펴보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음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8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하였음
 -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함
 - 분석 결과에서는 벤처기업이 16%로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비벤처 중소기업 20.3%, 비벤처 대기업 22.2%로 나타났음(<표 2-3> 참조)

<표 2-3>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차이 검증 결과

기간	구분	표본 수	평균	t-값	ANOVA(F-값)
1999~2013	벤처기업	1,062	16.00	-16.4242***	161.25***
	비벤처기업	5,366	21.38		
	벤처기업	1,062	16.00	-12.3789***	
	중소기업	2,416	20.33		
	벤처기업	1,062	16.00	-17.9202***	
	대기업	2,950	22.23		

주: 1. 유효법인세율 =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Asteriou and Hall(2007), Mayende(2013)을 따라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초로 모형을 설정하였음
 - 표본은 실태조사의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4> 참조)

<표 2-4>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Model 1(Log_Sale)		Model 2(Log_Value_added)	
	(1)	(2)	(1)	(2)
상수	15.68*** [0.669]	15.85*** [0.668]	13.40*** [0.653]	13.50*** [0.651]
Log_Capital	0.0282** [0.0134]	0.0296** [0.0134]	0.290*** [0.0135]	0.292*** [0.0135]
Log_Labor	0.883*** [0.0301]	0.887*** [0.0301]	0.0888*** [0.0295]	0.0909*** [0.0295]
Tax_Incentive	0.393*** [0.119]	0.234** [0.103]	0.291*** [0.100]	0.209** [0.0858]
Venture_Policy	2.580*** [0.488]	2.566*** [0.488]	1.682*** [0.505]	1.665*** [0.506]
Age	0.0140* [0.00850]	0.0038 [0.00743]	0.0108 [0.00718]	0.00455 [0.00620]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ies	Yes	Yes	Yes	Yes
관측 수	1,871	1,871	1,832	1,832
기업 수	259	259	259	259

주: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부록 2> 참조.
 2.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III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선택과 집중

-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벤처투자자 자금 회수기회의 부족이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여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시장실패로 설명될 수 있음²⁾
- 이러한 이유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며, OECD(1996)에서도 벤처기업은 고용창출과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의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³⁾

2) 김진수·김재진(2000), pp. 34-37 참조

3) OECD(1996), p. 4

1.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에서 보듯이, 정보 활용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 FIU법 통과와 2014년의 미흡한 세수진도율을 감안할 때, 공약가계부의 필요재원 134.8조원 중 약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세율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음⁴⁾
-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 없이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낮거나 당초의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지속적 정비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⁵⁾
 -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부록 1> 참조)
-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5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일몰이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그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제도 중 44.0%(총 29.8조원 중 13.1조원)에 일몰기

4) 김재진, 「세수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4.

5) 특히,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 중 18.0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하여 5년 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몰이 종료되는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기 때문임⁶⁾

- 둘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당사자의 수요에 근거(<표 3-1>와 <표 3-1> 참조)하되, 조세지원제도라 함은 국민경제적 효과, 타산업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사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면밀히 고려한 후 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 제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위 3개의 항목을 선택 시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인가중치를 측정함

<표 3-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단위: %)

조세지원 항목	인지 및 활용여부		실효성이 높은 제도	폐지해야 할 제도
	인지	활용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1	1	1	13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2	2	2	11
재산세 50% 감면	4	4	3	12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5	5	4	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9	8	5	4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	10	6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	12	7	1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13	13	9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0	9	8	6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6	10	10
벤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	7	11	5
소득세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3	12	8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7	11	13	2

6) 전병목 외, 「조세지출 사전·사후 관리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2014, p. 5, 재인용.

<표 3-2> 벤처케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단위: %)

조세지원 항목	인지 및 활용여부		실효성이 높은 제도	폐지해야 할 제도
	인지	활용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1	2	-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4	3	1	-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4	5	-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4	4	-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5	5	6	-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6	5	8	2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7	5	7	3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3	2	3	1

2.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 강화

[방안 1]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 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다음 연도 개시일 이후 5년 내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며,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등록세, 2년간 인지세는 전액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일반 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1999년 이후부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85.8%를 차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으로 나타남
 -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도 1순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79.8%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성과가 약 0.2~0.4%p 증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의 확대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됨
 - 다만, 일반 벤처기업에게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 및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998년 이후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하에서는 일반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까지 지원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효율

7)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사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였다.

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됨

[방안 2] 전문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혜택 확대⁸⁾

-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은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성과를 검증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엔젤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일부로서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엔젤투자자의 투자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2011년 이후로 확대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⁹⁾ 및 공제한도를 50%까지 확대하였고, 투자대상도 기존의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 및 투자조합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공제종합한도인 2,5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였음
- 특히,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자자가 증가하여야 함¹⁰⁾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엔젤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7월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¹¹⁾
- 따라서 벤처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중 적정요건¹²⁾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8) 김진수(2011), pp. 21~22, 김재진(2013), pp. 63~64을 참조하되, 최근의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함
 9)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추이: (97.12.) 20% → (99.9) 30% → (02.1) 15% → (07.1) 10% → ('11.12) 20% → ('13.1)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 30% (현재)
 10) 박유리·전성주·주재욱(2012.), p. 20. 재인용
 1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2) 전문엔젤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신주 또는 지분 투자형태로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상장법인의 창업자,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 창업기업을 멘토링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음¹³⁾

-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엔젤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매우 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은 일임
- 또한, 전문엔젤투자의 경우 일반엔젤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므로 조세지원으로 인한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세법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이 중심이 되는 '전문엔젤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 중 활용도가 높은 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단, 해당 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¹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도를 두었고,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시 추징하는 의무보유기한을 두고 있음¹⁵⁾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세제상 혜택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임
- 둘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임
 - (1)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제한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전문엔젤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기간이 지나면 투자실적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13) 김재진(2013), pp. 47~50을 참조하여 최근의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추이: ('01.12) 50% → ('08.12) 30% → ('11.12) 40% → 50%(현재)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을 두지 않거나 (2) 소득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를 연장하는 방안임

[방안3]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 최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벤처자금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여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바,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으로 대표되는 벤처투자자금의 중간회수 시장에서의 기업공개가 국내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의 정체로 2012년 기준 평균 소요기간이 12.2년이 걸리고 있음
 -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 수는 2000년 178개에서 2013년에는 37개로 급감하기도 하였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를 창업 및 초기단계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함
 - Da Rin et al.(2006)은 자본이득세의 감소가 초기단계의 벤처투자의 비중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는 자본이득세가 초기벤처시장 형성 시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 투자자의 투자 및 회수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통하여 창업 및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 재투자 시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¹⁶⁾

- 벤처투자 시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3년 이내의 보유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EIS¹⁷⁾ 적격기업의 발행주식에 3년 이내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적격기업에 투자 시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액 최대 100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¹⁸⁾
 - 다만, 개인투자자가 투자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Mason(2009)은 EIS제도에 대한 초기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동 제도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이 약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기한 내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일정 규모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조건 위반 시에는 추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할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17)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격비공개기업이 발생하는 신규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제도로, 적격기업(Qualifying Company)이 발행한 적격주식(Qualifying Shares)을 적격 투자자(Qualifying Individual)가 투자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됨

18) EIS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변천과정

회계연도	투자액 한도	소득공제율
1997-1998	10만파운드	20%
1998-1999	15만파운드	20%
2004-2005	20만파운드	20%
2006-2007	40만파운드	20%
2008-2009	50만파운드	20%
2011-2012	50만파운드	30%
2012-2013	100만파운드	30%

IV 기대효과

-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은 지식기반·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자금조달, 투자,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¹⁹⁾
 -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결정자는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설계 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19) 2010년 세계개편(안)에서 동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 공제가 일몰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된 바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3 조세개요』, 2013. 08.
- 김대근·이귀선, 「코스닥등록법인의 조세혜택에 관한 연구」, 『승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5권, 2002.
- 김동훈,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2권 제1호, 2012. 1.
- 김재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 _____,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재진·김진수,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김진수,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_____,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유리·전성주·주재욱, 「ICT 벤처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손동원 외, 『벤처정책의 성과평가 및 향후 방향』, 인하대학교, 2006.
- 이형수·김갑순, 「내제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 2010.
- 이창우와 전규안,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학연구』 제26권 제4호, 1997. 11.
- 서병우·문승권,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2권 제2집, 2014.
- 송치승·박재필,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2013. 10.
- 신영임·이영환,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전병목 외, 「조세지출 사전·사후 관리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2014.
- 정운오·노희천,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암묵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제37권 제4호, 2003.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지성권 외, 「종업원 재량권과 성과보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37집,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엔젤투자) 촉진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자료 수집』, 2010.
-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일본, 벤처기업 등 개업 촉진지원책 마련』, 2014. 5. 13.
- KOTRA, 『한국·싱가포르·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 각국 투자유치기관, 인센티브 제도 및 투자환경 비교』, 2006.
- Asteriou, D., & Hall, S. G. (Eds.), Applied Econometrics. New York, NY: Macmillian Publishers Limited., 2007.
- Da Rin, D., G. Nicodano and A. Sembenelli, "Public policy and the creation of active venture capital mark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2006, pp. 1699~1723.
- Ernst & Young, "Outline of tax reforms to stimulate investment," *Japan tax newsletter*, October 31, 2013.
-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
- _____, "Venture Capital Trusts: Introduction to National Statistics,"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rc.gov.uk/statistics/vct.htm#1>

_____,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Introduction to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6400/eis-intro.pdf

Kerr, W. R., J. Lerner and A. Schoar, "The Consequences of Entrepreneurial Finance: A Regression Discontinuity Analysis," Harvard Business School Entrepreneurial Management Working Paper No. 10-086, 2010.

Levenfeld, Platt, Romem, "Israel, Country Q&A," Private Equity 2009 Volume 2: Venture Capital, Cross-Border Handbooks.

Library of Congress, *Taiwan: Law on Industrial Innovation Adopted in Place of Expired Statute for Upgradign Industries*, Apr 22, 2010.

Mason, C., "Public Support for the Informal Venture Capital Market in Europe: A Critical Review,"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27, 2009.

Mayende,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Uganda," *Journal of Politics and Law*, Vol. 6, No. 4, 2013.

Ministry of Economy State of Israel, *Taxation Benefits for Foreign Investors in Israeli Investment Funds*, 2012.

NVCA, *Venture Impact: The Economic Importance of Venture Capital-Backed Companies to the U.S. Economy*, 2011.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2.

_____, *OECD Work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2013-14*, 2013.

_____, *Policies for Seed And Early Stage Finance: Summary of The 2012 OECD Financing Questionnaire*, 2013.

_____,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 1996.

PwC, *Innovation: Government's Many Roles in Fostering Innovation*, 2010.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3&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7&hdnDiv=185&&actionType=view&runno=59461&hdnTopicDate=2005-10-06&hdnPage=39

<http://www.investinisrael.gov.il/NR/exeres/3405B5DE-829B-4F0B-A70D-A48F88080067.htm>

<http://www.investinisrael.gov.il/NR/exeres/3405B5DE-829B-4F0B-A70D-A48F88080067.htm>

<http://www.israelbusiness.org.il/financialassistance/investmentincentives>

http://www.ivc-online.com/language/en-US/Research_Center/IVC_Publications/VC_Fund_Reports/VC_Fund_Raising.aspx

<http://asialawprofiles.com/Guide/489/Taiwan-legislation-guide.html>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1939_text

<http://www.wantchinatimes.com/UploadFiles/Taiwan's%20Statute%20for%20Industrial%20innovation.pdf>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http://www.magma.co.uk/seis-government-statistics>

<http://www.magma.co.uk/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introduction>

http://www.nvc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44&Itemid=103

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http://www.kvca.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부록 1> 각 국의 벤처기업/캐피탈 관련 조세지원제도 정리

구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p>① 초과누진 법인세율: 소득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p> <p>② S법인제도: S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S법인 주주의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 SBIC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주식매각의 과세경감,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 SSBIC 투자에 대한 특례)</p> <p>③ 파트너쉽: 이중과세 배제</p>	<p>① 법인세 인하: 슬라이딩 세율 적용(법인소득이 30만~150만 파운드인 경우)</p>	<p>① 자본투자촉진법 상의 조세 혜택: 우선지역 A에 위치한 기업의 법인세율은 6%, A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12.5%로 법인세 과세, 소득창출 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p>	<p>① 설비투자 촉진 세제: 취득가액의 최대 100%의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2016년 3월말까지 취득 시)</p> <p>② 중소기업 자본 지출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설비 취득가액의 최대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 7% 세액공제</p>	<p>① 촉진산업승급조례(2009년 일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특정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 회사의 당해 연도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20%를 공제 - 신흥,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법인세 면제(선택적) -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의 획득: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 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유예 <p>② 산업창신조례(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하 및 대만에 위치한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p>④ R&D 일반적 조세지원: 일반연구개발비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20%), 단순공제(14%)</p>	<p>② R&D 조세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추가소득 공제(225%), 연구개발비용의 조정 전 공제, 자본자산에 대한 지출 분의 첫째 완전상각</p>	<p>② R&D 비용 공제: 산업, 농업, 교통, 에너지 분야 기업의 R&D 비용은 비용발생 당기에 공제 가능(OCS 승인시)</p>	<p>③ 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12% 세액공제 가능</p>	<p>③ 촉진산업승급조례(2009년 일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5년간 R&D 투자액의 30% 공제, 인력개발 투자액의 30% 공제

구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투자자(주주)에 대한 지원제도	<p>⑤ 미공개기업 주식매각 손실 과세특례: 통상소득과 합산 \$3,000까지</p> <p>⑥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 5년 이상 보유주식의 매각 이익의 50% 비과세</p> <p>⑦ 엔젤세제: 5년 이상 보유 주식 매각이익의 50% 비과세</p>	<p>③ VCT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최대 20만 파운드의 연간 투자액의 30% 까지 세액공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보통주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p> <p>④ EIS 주주에 대한 세제우대: 연간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 투자액의 30% 소득공제,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식 매각손 통상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p> <p>⑤ SEIS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투자액의 50%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50%면제 (2013~14),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p>	<p>③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그 투자 실현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p>	<p>④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 세제우대: 벤처기업 투자로 인산 손실을 위한 보전금(벤처지분의 장부가액 기준 최대 80%까지)</p> <p>⑤ 엔젤세제: 일정 요건 기업에 대해 투자한 경우, 투자시점과 매각시점에 세제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시점: 투자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양도익에서 공제 - 매각시점: 이익의 경우, 양도익을 1/2로 압축하여 과세/손실의 경우, 손실을 차기 연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p>④ 촉진산업등급조례(2009년 일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주주에 대한 투자세금 공제의 혜택(선택적)

<부록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
종속변수	Log_sale	log(매출액)
	Log_Value_added	log(부가가치)
설명변수	Log_Labor	log(종업원 수)
	Log_Capital	log(유형자산)
	Tax_Incentive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 1, 그렇지 않은 경우 0
	Venture_Policy	벤처기업 육성 정책 도입 후인 1999년 이후는 1, 이전은 0
기업특성변수	Age	기업연령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작성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44-414-2229)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44-414-2226)